

# 광고물법규와 디지털광고물

(2017 한국옥외광고협회)

김 정 수

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

[jesgim@hanmail.net](mailto:jesgim@hanmail.net)

## 법규(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)의 근거

### 가. 헌법 → 법(률)

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**언론·출판의 자유**와 **집회·결사의 자유**를 가진다.

② **언론·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**과 **집회·결사에 대한 허가**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

④ **언론·출판**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 **언론·출판**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37조 ②국민의 **모든 자유와 권리**는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**필요한** 경우에 한하여 **법률로써 제한**할 수 있으며,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.

## 나. 법(률) → 대통령령(시행령)

제3조 ① ....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·설치하려는 자는  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
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광고물등의 종류·모양·크기·색깔, 표시·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 
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다. 법(률), 대통령령 → 시·도 조례, 시·군·구 조례

법 제16조 광고물 실명제를 표시할 광고물의 종류, 표시내용, 위치,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 
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법 제17조 ....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영 제20조 ....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·도 조례로  
정한다.

영 제50조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, 수강절차,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 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한다.

## 광고물법의 개정

2016. 1. 6 공포, 2016. 7. 7 시행

명칭 변경 :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

→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\* 1962년 「광고물등단속법」 : 단속 대상

1990년 「옥외광고물등관리법」 : 관리 대상

2016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: 관리·진흥 대상

옥외광고업(자) → 옥외광고사업(자)

## ‘디지털광고물’의 근거 마련

\*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·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##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’제 도입

\* 한국의 타임스스퀘어

## 위반에 대한 조치, 안전관리 강화

\* 시·도지사의 조치, 풍수해 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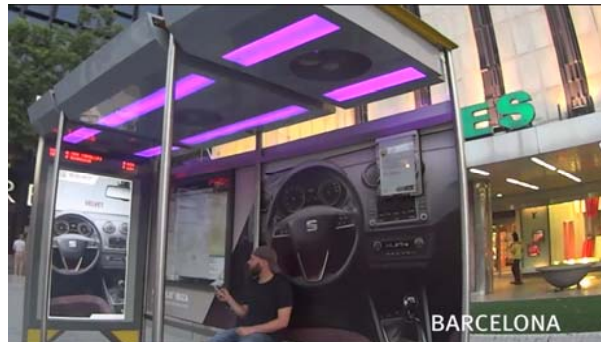
# '디지털광고물'





# 옥외광고의 세계적 트렌드

Interactive / Creative / Digital Signage / Innovation / Flexibility



## 법 개정의 세부내용

### 디지털광고물 (법 제2조제1호)

-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·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  - ↳ 광고물등의 종류, 위치·장소, 규격, 표시·표출방법, 기간, 허가·신고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

### 광고물등의 자유표시구역 (법 제4조의4)

- 광고물등의 모양·크기·색깔, 표시·설치의 방법, 기간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(광고특구)
- 대상지역 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
- ‘한시적 자유표시구역’ : 국제행사·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하여 특성화된 환경 조성의 경우
- 시·도지사의 신청,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정
- 개별 광고물등의 허가·신고 : 시·도지사(법 제3조의2)
- 지정의 취소(행정자치부장관) : 시·도지사 요청시, 취지에 부적합한 운영시

## 기금조성 광고물등의 협의(허가) (법 제6조제4항)

-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는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은 시장등과 협의 ⇨ 허가로 간주

## 옥외광고발전기금 (법 제6조의2)

- 명칭 : 시·군·구 옥외광고정비기금 ⇨ 시·도, 시·군·구 옥외광고발전기금
- 목적 : 광고물등의 정비,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- 용도 : 옥외광고산업 진흥,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, 옥외광고사업자 등의 교육·지원,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

## 옥외광고심의위원회 (법 제7조)

- 명칭 :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⇨ 옥외광고심의위원회
- 심의사항
  -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
  -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
  - 광고물의 표시·설치와 관련 영 또는 시·도,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



## 안전관리 강화(풍수해 대비)

-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(법 제9조의2)
-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긴급 조치 (법 제10조의2)

## 위반 등에 대한 조치(강화) (법 제10조)

- 안전점검 결과 안전저해 우려 광고물등의 조치
  - 제5조(금지광고물등) 위반 광고물은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
  - 시·도지사의 합동점검 및 직접 조치
    - 시·도지사의 시장등과 합동점검, 시장등에게 통보
    - 시장등은 행정명령, 행정대집행(정비), 전화번호 정지 요청 등 조치, 결과 보고
- \* 시장등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·도지사가 직접 조치

## 벌칙 대상 추가(강화) (법 제17조의3)

- 음란·퇴폐적 내용으로 미풍양속 해칠 우려의 광고물
- 제작·표시자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## 대통령령 개정

2016. 7. 7 시행

###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#### 옥외광고물의 분류 (영 제3조)

- 현행 17종 → 16종
- 벽면 이용 간판(가로형간판+세로형간판), 돌출간판, 공연간판, 옥상간판, 지주 이용 간판, 입간판, 현수막, 애드벌룬, 벽보, 전단,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,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,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, 선전탑, 아치광고물, 창문 이용 광고물

#### ‘디지털광고물’의 정의 (법 제2조제1호)

- 법(제2조) :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·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- 영(제2조제2항) :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·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·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

\* 디지털 디스플레이 : 전기·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또는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

## 광고물별 표시방법

영이 표시방법을 직접 규정하는 광고물등 - 5종

옥상간판(영 제15조), 지주 이용 간판(영 제16조),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(영 제17조),  
교통시설 이용 광고물(영 제18조),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(영 제19조)

시·도 조례가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광고물등 - 11종

벽면 이용 간판, 돌출간판, 공연간판, 입간판, 현수막, 애드벌룬, 벽보, 전단, 선전탑,  
아치광고물, 창문 이용 광고물

※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(영 제20조)

② 이 장(영)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물등의 표시·배부방법은 시·도 조례로 정함

## “옥외광고물”이란 (법 제2조)

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,

**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**으로서

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, 교통수단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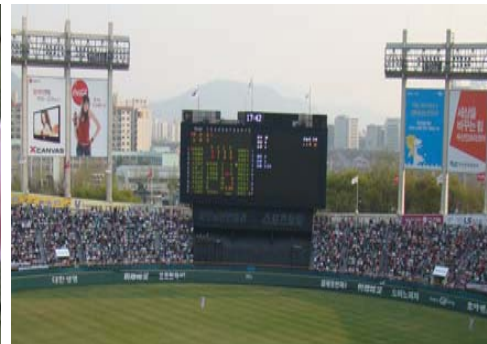
- 간판·**디지털광고물**·입간판·현수막·벽보·전단,
-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
※ **교통시설** : 지하도, 철도역, 지하철역, 공항, 항만, 고속국도

**교통수단** : 철도차량, 도시철도차량, 자동차, 선박(기선, 범선), 항공기등(항공기, 초경량비행장치)

**디지털광고물** :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노출로 화면·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·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

광고물, 게시시설, 광고물+게시시설 ➔ “**광고물등**” (법 제3조제1항)



## 디지털광고물 관련 용어의 정의

### 옥외광고물(법 제2조)

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  
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, 교통수단 포함)

- 간판·**디지털광고물**·입간판·현수막·벽보·전단
-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
\* 디지털광고물 :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·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### 디지털광고물(영 제2조제2항)

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·노출로 화면·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·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

\* 디지털 디스플레이 : 전기·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·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

## 광고물등의 허가·신고, 표시방법

### 허가·신고 의무 (법 제3조제1항)

영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·설치하려는 자는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.(변경 포함)

\* 시장등 :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

### 표시방법 (법 제3조제3항)

광고물등의 종류·모양·크기·색깔, 표시·설치의 방법 및 허가·신고의 기준은 영으로 정함

→ 영 제3장(제12조~제20조)

→ 영 제3조(옥외광고물의 분류) : 16종

벽면 이용 간판(가로형·세로형), 돌출간판, 공연간판, 옥상간판, 지주 이용 간판, 입간판, 현수막, 애드벌룬, 벽보, 전단,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,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,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, 선전탑, 아치광고물, 창문 이용 광고물

### 허가·신고 대상 (영 제4조제1항제12호)

네온류, 전광류, 디지털홀로그램, 전자빔 등은 모두 허가 대상(종류·규격·위치 불문)



## 영 제3장 : 광고물등의 표시방법

### 광고물등의 표시기간(영 제8조), 기간연장(영 제10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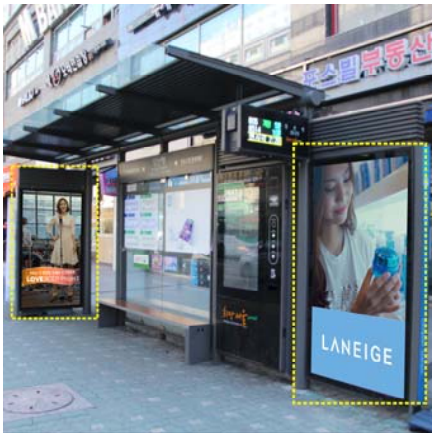
- 허가·신고 표시기간(3년) 연장 :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허가신청·신고  
안전점검 대상은 안전점검
- 기간연장 허가·신고 제외 : \* 2017 대통령령 개정 중
  - 벽면 이용 간판, 돌출간판, 지주 이용 간판, 입간판 중 자사광고로 계속 사용할 경우
  - 그 밖의 광고물등은 계속 기간연장의 허가·신고
- ※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

### 일반적 표시방법 (영 제12조)

- 한글표시 원칙, 외국문자 표시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한글 병기
- 형광도료, 야광도료 사용 금지
- 지면, 건물, 구조물 등에 고정, 이동 간판의 설치 금지 \* 입간판은 시·도 조례로 정하면 허용
-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 : 3개(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, 앞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) 안에서 시·도 조례로 정함 \* 입간판 1개 추가
-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시·도 조례로 정함

# ‘디지털광고물’ 적용 대상 : 8종 (영 제3조의2)

벽면 이용 간판, 공연간판, 옥상간판, 지주 이용 간판,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,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,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, 창문 이용 광고물



## 전기사용 광고물등의 표시방법

- 일반적 기준 \* 디지털광고물

###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(영 제14조)

-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의 안전인증을 받은 자재 사용, 배선 노출 금지, 전선 연결부분 피복,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맞는 설계·시공
- 백열등·형광등 단순조명 : 외부에 직접 노출 금지
- **전용·일반주거지역**(15m 이상 도로변은 제외), **시설보호지구**(상업지역은 제외)에서 **네온류·전광류·디지털광고물 사용 금지** (의료기관·약국,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점멸·동영상 아닌 경우는 예외)
- 점멸·동영상 광고물을 차량 진행방향 정면에 표시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10m 이상 유지
-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에 점멸·신호등 색깔의 광고물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유지
- 빛의 밝기·색깔은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
- **30m<sup>2</sup> 이상의 타사광고인 전광류·디지털광고물**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**공공목적 광고내용**을 시간당 표출비율 20%(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) 이상 표출

## 광고물등 빛의 밝기 -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

- 법 제9조(조명환경관리구역) : 제1종·제2종·제3종·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
- 법 제11조(빛방사허용기준) :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 
(시·도 조례로 강화 가능)
- 법 제12조(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) : **조명환경관리구역**에서는 **허용기준을 준수**
- 법 제18조(과태료) :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영 제2조(조명기구의 범위) : ‘옥외광고물법’ 제3조에 따른 **허가대상 옥외광고물**  
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교정 및 군사시설에  
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제외)
- 영 제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- 규칙 제6조(빛방사허용기준)
  -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
  - 그 밖의 조명기구(광고물등)

## 벽면 이용 간판

(가로형 간판+세로형 간판) \* 디지털광고물 적용

### ○ 정 의 (영 제3조)

- 문자·도형 등을 목재·아크릴·금속재·**디지털 디스플레이**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·설치하여 건물·시설물·점포·영업소 등의 벽면, 유리벽의 바깥쪽,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
- 문자·도형 등을 도료, 색상이 표시된 천·종이·비닐·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·시설물·점포·영업소 등의 벽면, 유리벽의 바깥쪽,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
- 주유소·가스충전소의 주유기·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·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





○ 허가·신고 (영 제4조, 제5조)

허 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어느 한 변이 10m 이상인 것</li> <li>- 타사광고</li> <li>- 광원 직접노출 네온류·전광류</li> <li>- 디지털광고물</li> </ul>	조명여부 불문 조명·규격불문 규격불문 규격불문
신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면적 5㎡ 이상</li> <li>- 건물의 4층 이상에 표시</li> </ul>	비조명 또는 백열등·형광등·LED 등의 단순조명(내·외부조명)
배 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면적 5㎡ 미만이고, 광원 직접노출 네온류·전광류, 디지털광고물이 아닌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3층 이하에 표시</li> <li>· 4층 이상 최상층에 건물 사용자의 성명·상호·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</li> </ul> </li> </ul>	비조명 또는 백열등·형광등·LED 등의 단순조명(내·외부조명)

\* **디지털광고물** : 디지털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·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빛의 점멸·노출로 화면·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광고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

\* **전광류** : 발광다이오드,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(發光) 장치를 이용한 것

○ 표시기간(영 제8조) : 3년 이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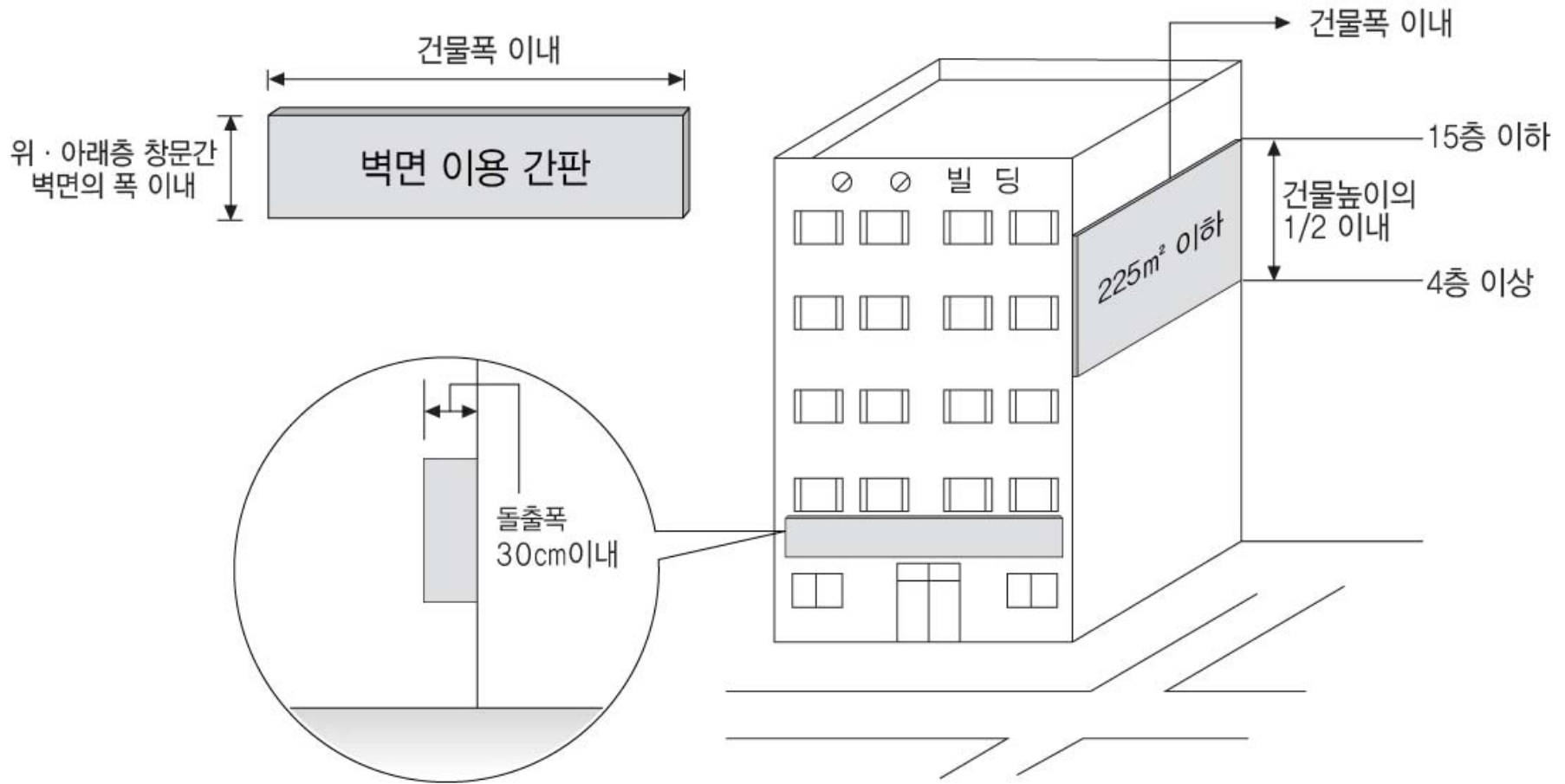
○ 표시방법(시·도 조례 표준안)

표시위치, 수량	규 격	표시내용
<p>3층 이하에 업소당 1개(아래는 예외)                      * 개별 규정에 따른 간판                      - 1층 주출입구 양쪽에 1.2m<sup>2</sup> 이하                      -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                     - 앞·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                    - 물가안정 등 심의로 결정한 경우</p>	<p>가로 : 건물의 가로폭 이내                      세로 : 위층-아래층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                     * 창문이 없는 벽면의 세로는 심의로 정함                      돌출폭 : 30cm 이내                      ※ 전광류, 디지털광고물 ❌</p>	<p>자사광고</p>
<p>건물의 가장 높은 층(옥상난간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- 3면에 입체형 또는 도로로 각 1개</p>	<p>가로 : 건물의 가로폭 이내                      세로 : 벽면의 폭 이내                      * 세로로 길게 표시는                      가로:3m 이내, 세로:건물높이의 1/2 이내                      돌출폭 : 30cm 이내                      ※ 전광류, 디지털광고물 ❌</p>	<p>건물명, 건물 사용자의                      성명·상호·상징도형</p>
<p>4층 이상 15층 이하                      - 3층 이하 간판이 없는 벽면에</p>	<p>면적 225m<sup>2</sup> 이내                      가로 건물폭 이내,                      세로 건물높이의 1/2 이내                      돌출폭 40cm 이내                      (도로위 공간점용 없으면 70cm 이내,                      전광류·디지털광고물은 180cm 이내)</p>	<p>자사광고                      타사광고(상업지역에 옥상                      간판이 없는 건물)</p>

주유소·가스충전소 차양면(측면) 주유소·가스충전소 차양면(현수식)	가로 : 차양면 가로폭 이내 세로 : 1면 면적 3.5m <sup>2</sup> 이내, 두께 30cm 이내	상호, 정유사 등의 명칭
전광류, 디지털광고물을 적용·표시 가능한 경우 - 4층 이상 15층 이하	면적 225m <sup>2</sup> 이내 세로 건물높이의 1/2 이내	자사광고 타사광고(상업지역에 옥상 간판이 없는 건물)
- 연면적 5천m <sup>2</sup>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	4m <sup>2</sup> 이하, 정지화면만(점멸·동영상 ×)	건물·건물 사용자 안내

- 간판은 출입문, 창문을 막을 수 없음
- 간판은 벽면에 밀착(벽면부터 돌출폭은 간판별 돌출 허용폭 이내)

※ 시·도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, 반드시 해당 시·도 조례를 확인



- 건물상단 3면에 입체형 - 건물명, 건물 사용자의 성명·상호·상징도형을 표시
- 1 ~ 3층 : 입체형 또는 판류이용 - 타사광고 표시 금지
- 4층 이상 : 상업지역에서 옥상간판이 없는 건물만 타사광고 가능

## 돌출간판

\* 디지털광고물 적용 ❌

### ○ 정의 (영 제3조)

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·아크릴·금속재·~~디지털 디스플레이~~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·미용업소의 표시등(標識燈)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



### ○ 허가·신고 (영 제4조, 제5조)

- 허가 : 신고 대상을 제외한 돌출간판
- 신고 : 의료기관·약국의 표시등(“+”, “약”), 이·미용업소 표시등, 윗부분까지 높이 5m 미만, 한 면의 면적 1m<sup>2</sup> 미만

### ○ 표시기간(영 제8조) : 3년 이내

## 공연간판

\* 디지털광고물 적용

### ○ 정 의 (영 제3조)

공연·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·그림 등을 목재·아크릴·금속재·**디지털 디스플레이**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

### ○ 허가·신고 (영 제4조, 제5조)

최초 표시는 허가, 나머지는 신고

## 옥상간판

\* 디지털광고물 적용

### ○ 정 의 (영 제3조)

-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·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거나

- 승강기탑·계단탑·망루·장식탑·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·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

### ○ 허가·신고(영 제4조, 제5조) : 모두 허가

## 지주 이용 간판

\* 디지털광고물 적용

### ○ 정 의 (영 제3조)

-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·아크릴·금속재·**디지털 디스플레이**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
- 문자·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·사각기둥·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
- 군사시설,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, 공사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



### ○ 표시기간(영 제8조) : 3년 이내



- 허가·신고 (영 제4조, 제5조)
  - 허가 : 윗부분까지의 높이 지면부터 4m 이상
  - 신고 : 윗부분까지의 높이 지면부터 4m 미만

○ 표시방법(영 제16조)

표시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물 부지 안의 지주 이용 간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물 사용자의 성명·주소·상호·전화번호·상징도형만 표시(주유소·가스충전소 표시등 포함)</li> <li>- <del>네온류·전광류, 점멸방법 사용 금지</del> * 네온류·전광류·디지털광고물 사용 가능</li> <li>- 그 밖에 표시에 관하여 시·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물 부지 밖의 지주 이용 간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너비 6m 이상 도로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만 표시 가능</li> <li>- <b>전기사용 금지</b>, 도로표지·교통안전표지 등 색상과 혼동 우려 있는 색깔 사용 금지</li> <li>- 특정한 지역·장소·건물·업소 등의 명칭·위치 등을 유도·안내하는 것만 표시</li> <li>- 그 밖에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·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(전자게시대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, <b>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·전통시장</b> 등 홍보만 표시</li> <li>- 상업지역·공업지역,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,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</li> <li>- 제14조를 따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표시면적 12m<sup>2</sup> 이하</li> <li>- 수평거리 100m 이상으로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</li> </ul> </li> </ul>

시·도 조례  
표준안

- 전광류, 디지털광고물(건물의 부지 안에서만 가능)
  - 설치지역 : 상업지역,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
  - 규격 : 면적 1㎡ 이하, 높이 1.5m 이하
  - \* 건물 1층 출입구 벽면의 전광류·디지털광고물과 중복 설치 ×
- 전자게시대(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) 설치·관리 기준
  - 설치지역 : 철도역·지하철역·공항·항만·버스터미널·트럭터미널의 광장,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심의를 거쳐 시·도지사가 정한 지역
  - 수평거리 100m 이상
  - 점멸·동영상 금지(정지화면으로 표시)
  - 그 밖에 세부 관리기준은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함(전자게시대 운영상 필요한 사항)



##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

\* 디지털광고물 적용

### ○ 정의 (영 제3조)

-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



○ 표시기간 : 3년 이내,

○ 허가·신고(영 제4조) : 모두 허가 대상

### ○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

- 철도역·공항·항만·버스터미널 광장의 시계탑·조명탑·교통안내소·안내게시판·관광안내도·일기예보탑
- 고속국도 휴게소의 안내탑·시계탑·교통안내소·관광안내도·게시판
- 버스승강장·택시승강장·노선버스안내표지판·지정벽보판·현수막지정게시대
-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공공시설물

##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

\* 디지털광고물 적용

### ○ 정 의 (영 제3조)

지하도·철도역·지하철역·공항·항만·고속국도 등 교통시설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·아크릴·금속재·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



### ○ 표시기간(영 제8조) : 3년 이내

### ○ 허가·신고 (영 제4조, 제5조)

- 허가 : 지하도·지하철역·철도역·공항·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교통 시설 이용 광고물(변경, 기간연장 포함)

\* 지하도·지하철역·철도역·공항·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허가·신고없이 표시

##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

\* 디지털광고물 적용

### ○ 정 의 (영 제3조)

-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(철도차량, 도시철도차량, 자동차, 선박, 항공기등) 외부에 문자·도형 등을 아크릴·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



### ○ 표시기간(영 제8조) : 3년 이내(비행선은 30일 이내)

### ○ 허가·신고 (영 제4조, 제5조)

- 허가 : 타사광고(사업용자동차, 비행선) - 신고 : 자사광고

\* 철도차량, 도시철도차량은 별도 관리

### ○ 표시방법(영 제19조) : 사업용, 음식판매 자동차-타사광고, 자가용-자사광고 원칙,

**전기사용·발광방식 조명 금지**

창문 제외한 각 면 면적의 1/2 이내 옆면, (사업용 : 뒷면, 버스돌출번호판)





## 창문 이용 광고물

\* 디지털광고물 적용

### ○ 정 의 (영 제3조)

- 문자·도형 등을 목재·아크릴·금속재·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·설치하여 건물·시설물·점포·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, 창문,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
- 문자·도형 등을 도료, 천·종이·비닐·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·시설물·점포·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, 창문,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



### ○ 허가·신고(영 제4조, 제5조)

- 허가 : 네온류, 전광류, 디지털광고물
- 신고 : 규정 없음

○ 표시기간(영 제8조) : 규정 없음

○ 표시방법 (시·도 조례 표준안)

- 천·종이·비닐 등 : 건물 3층 이하에

- 판(디지털디스플레이 포함)·입체형

· 판·입체형 : 건물의 2층 이하에

· 전광류, 디지털광고물 : 건물 1층에

- 규격 : 해당 유리벽·창문 등 전체면적의 1/4이내(최대 1m<sup>2</sup> 이하)

※ 시·도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, 반드시 해당 시·도 조례를 확인